

# 金融關係法制 整備의 現況과 展望

高 東 源\*

## 차 례

### I. 머리말

### II. 金融關係法制 整備의 現況

1. 金融監督 및 中央銀行 制度의 改編 關係 法律
  - (1) 金融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제정
  - (2) 한국은행법의 개정
2. 金融産業의 構造調整 關係 法律
  - (1) 金融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개정
  - (2) 예금자보호법의 개정
  - (3) 金融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 설립에관한법률의 제정
3. 金融機關 및 金融去來 關係 法律
  - (1) 은행법의 개정
  - (2) 金融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제정
  - (3) 기타 金融기관 關係 법률의 제정 및 개정
4. 資産流動化制度 導入 關係 法律
  - (1) 資産유동화에관한법률의 제정
  - (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의 제정

### III. 金融關係法制 整備의 展望 및 發展方向

1. 中央銀行의 役割 強化
2. 金融監督機構의 問題點 및 改編方向
3. 兼業銀行制度(Universal Banking System)의 導入
4. 預金保險制度의 改善

### IV. 맺는 말

\* 金·張 法律事務所 辯護士(美國 뉴욕주), 法學博士

## I. 머리말

1997년말의 외환·금융위기는 우리 나라 금융산업의 큰 틀을 바꿔놓은 계기가 되었다. 기업들을 비롯하여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5개의 부실은행<sup>1)</sup>을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들이 퇴출되는 등 큰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7년말의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구제금융 실시 이후 금융개혁 관련 법들의 제정 또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통합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탄생되었으며, 중앙은행제도의 개편도 이루어졌다. 또한 금융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출자 및 금융감독기구의 감자명령 근거 신설, 금융기관 합병절차의 간소화 등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감독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다기화되어 있던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통합하는 동시에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 정리기능을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자산유동화제도가 도입되었다. 지난 1년여 동안 취해진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짧은 시일에 이루어진 아주 획기적인 것들로서 금융산업에 일대 혁신을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난 1997년말 외환·금융위기 이후 제정되거나 개정된 주요 금융관계법률들의 내용을 고찰하면서 금융관계법제의 전망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그 동안의 금융관계법제의 정비 현황을 금융감독 및 중앙은행 제도의 개편 관계법률,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관계법률, 금융기관 및 금융거래 관계법률, 자산유동화제도의 도입 관계 법률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금융관계법제의 전망 및 발전방향을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 금융감독기구의 개편방향, 겸업은행제도의 도입,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등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동화은행, 대동은행, 동남은행, 경기은행, 충청은행을 말한다. 이들 은행의 퇴출은 퇴출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신한은행 등 5개의 은행이 인수하는 자산·부채이전방식(purchase and assumption: P&A)으로 이루어졌다.

## II. 金融關係法制 整備의 現況

### 1. 金融監督 및 中央銀行 制度의 改編 關係 法律

#### (1) 金融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제정

1997년 12월 31일 제정되고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금융감독기구 설치등에관한법률’은 금융감독제도의 개편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서, 그 동안 재정경제원, 한국은행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으로 분산되어 있던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 1) 金融감독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금융감독위원회가 1998년 4월 1일 설립되었다(법 제3조제1항). 금융감독위원회는 ① 금융기관<sup>2)</sup>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②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③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 ④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한다(법 제17조). 또한,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업무의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시·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법 제18조).

금융감독위원회는 당연직 3인과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임명직 6인 등 9인의 위원<sup>3)</sup>으로 구성되어 있다(법 제4조제1항). 임명직 위원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은 해당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

2)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투자자문회사,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탁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선물회사,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수협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 축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등을 말한다(법 제38조).

3)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3인이며,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1인,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1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인 등 6인이다(법 제4조제1항).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법 제6조제1항).

## 2) 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증권·선물시장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두어,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기타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법 제19조). 증권선물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고, 나머지 4인의 위원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법 제20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 3) 금융감독원의 설립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특수법인<sup>4)</sup>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집행기관이다(법 제24조). 금융감독원은 집행간부로서 원장 1인, 부원장 4인, 부원장보 9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두되,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며, 부원장과 부원장보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감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다(법 제29조).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보좌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법 제37조).

### (2) 한국은행법의 개정

1997년 12월 31일 개정되고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한국은행법은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기관이 통합되면서 은행감독 기능을 한국은행에서 분리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 1)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원칙 명시

개정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원

---

4)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하여 1999년 1월 1일 출범하였다.

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개정 한국은행법은 ① 한국은행의 통화 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하고(법 제3조), ②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법 제4조제1항), ③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정하고 이의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법 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 2) 금융통화위원회의 개편

중전의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명칭을 금융통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정책결정기구임을 명시하였다(법 제12조). 금융통화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전의 비상근이었던 위원을 상임으로 하였으며(법 제13조제4항), 재정경제원장관<sup>5)</sup>이 맡고 있던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직을 한국은행 총재가 겸임하도록 변경하였다(법 제13조제2항).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수를 중전의 9인에서 7인<sup>6)</sup>으로 축소하는 한편, 통화신용정책 결정과정에 정부의 영향력을 좀 더 배제하기 위하여 정부 추천 위원수를 중전의 5인에서 2인으로 줄였다(법 제13조제1항).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인 한국은행 총재의 임명방식도 중전에 재정경제원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방식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법 제13조제2항). 한국은행의 총재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법 제33조제2항). 나머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고 대통령이 임명하며(법 제13조제3항),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법 제15조).

## 3) 은행감독기능의 축소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면서, 중전에 한국은행은행감독원이 행사하던 은행감독기능도 한국은행에서 분리되었다. 따라서 한국은행법상의 은행감독에

5) 재정경제원은 199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998년 2월 이전에 해당되는 설명은 재정경제원으로 쓰기로 한다.

6)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 총재, 임명직 위원인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1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1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한국증권업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구성된다(법 제13조제1항).

관련되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한국은행에는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은행감독 기능만이 부여되었다.

즉, 한국은행은 금통위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sup>7)</sup>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법 제87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법 제88조제1항).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한국은행의 요구에 의한 검사 및 공동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88조제2항).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의 이러한 요구 또는 요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법 제88조제3항).

#### 4) 기타 사항

이 밖에도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법 제81조), 한국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지급결제 관련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재정경제원장관의 업무감사 및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법 제95조), 예산과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제외한 경비성 예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였다(법 제98조).

## 2. 金融産業의 構造調整 關係 法律

###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개정

#### 1) 1차 개정(1998년 1월 8일)

1997년 1월 13일 제정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은 1997년말의 외환·금융위기 이후 크게 두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8년 1월 8일 개정되고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은 금융감독기관의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및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을 강

7) 한국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법인(은행법 제2조)과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축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이 포함된다(법 제11조).

화하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출자 및 금융감독기관의 감자명령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데 주목적을 두었다.

우선 부실금융기관의 범위를 예금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금융기관의 정의에 맞추어 확대하였다<sup>8)</sup>(법 제2조제3호). 또한 경영개선조치와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즉,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불건전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경영개선조치의 범위를 주의, 경고,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보유자산의 처분, 점포·조직의 축소, 고위험 자산의 취득금지, 영업의 일부정지 등으로 확대하였으며(법 제10조제1항),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위의 경영개선조치를 명하거나 주식의 일부 소각 또는 병합, 관리인의 선임,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제3자에 의한 금융기관의 인수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법 제10조제2항).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각하거나 일정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법 제12조제3항). 감자명령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금융기관 이사회가 자본감소를 결의하거나 자본감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상법상의 감자관련 규정의 특례를 인정하였다(법 제12조제4항).

## 2) 2차 개정(1998년 9월 14일)

1998년 9월 14일 개정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부실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감자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금융감독기관의 적기시정조치<sup>9)</sup>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그 내용을 강화하였다.

8) 부실금융기관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고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예금채권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정지상태에 있거나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없이 예금채권 등의 지급이 어렵다고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였다(법 제2조제3호).

9) 적기시정조치라 함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규제 및 감독의 정도를 달리하여 자기자본의 충실도가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감독당국이 관련법규에 명시된 시정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적기시정조치 제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좋고,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규제법의 발전 방향”, 『상사법

우선, 부실금융기관의 범위에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을 추가하였다(법 제2조제3호). 또한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자본감소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다. 즉, 주주총회소집 통지기간, 대차대조표 공시기간, 주주명부폐쇄 공고기간,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등을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기간보다 대폭 단축하였다(법 제5조 및 제5조의2). 이외에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 금융기관에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판단하는 금융기관을 추가하였고, 적기시정조치의 내용도 주식의 전부소각, 영업의 전부정지,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 등을 추가하였다(법 제10조제1항).

## (2) 예금자보호법의 개정

1995년 12월 29일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IMF 구제금융 실시 이후 일련의 금융개혁 관련법률의 제·개정시 크게 개정된 이후 몇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1997년 12월 31일 개정되고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예금자보호법은 종전의 은행만을 대상으로 하던 예금보험제도를 그 대상을 확대하여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예금보험제도로 변경하였다. 즉, 종전의 예금보험공사,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으로 다기화되어 있던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통합하였다. 또한 예금자보호 기능의 효율화와 금융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 정리기능을 강화하였다. 즉,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대상을 확대<sup>10)</sup>하였으며, 부실우려금융기관<sup>11)</sup>에

연구』 제16권제2호, 상사법학회, 1997, 69~72면 및 최원형/하근철/이상훈, “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한 조기시정조치제도”,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96. 6, 6면 이하 참조.

10)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대상을 종전에 부실금융기관을 합병하거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 등으로부터의 자금신청이 있는 경우에서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 등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및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원활한 합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하였다(법 제38조제1항).

11) 채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금융기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법 제2조제5의2호).

대해서 출자 또는 출연 등을 통하여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38조의2제1항). 또한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정리금융기관<sup>12)</sup>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부실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계약을 신설되는 정리금융기관이 양수함으로써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신속하게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것이다(법 제36조의3제1항).

1998년 9월 16일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호 대상의 조정<sup>13)</sup>, 예금보험기금의 확충, 정리금융기관의 설립절차 간소화,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기관 감독관련 기능의 확충 등을 통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목적을 두었다.<sup>14)</sup> 즉, 예금보험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종전에 금융기관별로 차등화(부보예금잔액의 연 0.05~0.15%)되어 있던 예금보험료율의 상한을 연 0.5%로 인상하였고(법 제30조제1항),<sup>15)</sup> 정리금융기관을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관의 작성, 주식인수대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법 제36조의8제1항). 이외에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기관 감독관련 기능<sup>16)</sup>을 확대하였다(법 제21조제4항).

12) 정리금융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하는 주식회사이다(법 제36조의3제2항 및 제3항).

13) 1998.7.25일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의하여 보호대상 예금의 범위가 조정되었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호되는 예금은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의 예금, 은행간 예금, 외화예수금, 양도성예금증서, 개발신탁, 환매조건부채권매도(RP: 1998.7.25이전에 매도된 것), 은행발행채권 등이며, 상시보호되는 예금은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본보전신탁 등이고, 실적배당신탁과 1998.7.25일부터 매도하는 RP는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부칙 제1조 및 제2조).

14) 1998.7.25일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의하여 종전에 2000년말까지 원리금 전액 보장하던 것을 1998.8.1일 이후 가입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2000년말까지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원리금의 합계가 2,000만원 이내일 때는 원리금 전액을, 원금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원금전액(이자는 보장 제외)을 보장하도록 하고, 2001년부터는 원리금의 합계 2,000만원까지만 보장하도록 하였다(시행령 제18조제6항, 부칙 제4조).

15) 예금자보호법 시행령(1998.7.25 개정)에 의한 실제 적용되는 예금보험료율은 은행(0.05%), 증권회사(0.10%), 보험회사(0.15%), 종합금융회사(0.15%), 상호신용금고(0.15%), 신용협동조합(0.15%)이다(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별표 1).

16)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기관 감독기능은 이외에도 ①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② 부보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조사, ③ 금융감독원에 대한 부보금융기관의 검사 및 검사결과 요청, 공동검사 요청 등이다(법 제

###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 법률의 제정

1997년 8월 22일 제정되고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된 ‘금융기관부실 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은 금융기관 보유 부실자산을 조기에 정리하고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진 여신거래 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업공사를 설립하고, 동 성업공사내에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업공사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위탁 또는 인수받아 신속하게 정리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법 제4조 및 제5조). 성업공사는 종전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성업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법 부칙 제4조 내지 제6조), 법정자본금은 2,000억원이다(법 제9조제1항). 성업공사내에 성업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및 업무계획의 수립·변경,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영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법 제14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은 금융기관 출연금, 성업공사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출연금,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발행자금,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차입금,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되며(법 제39조), 조성된 자금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및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 자산의 인수,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된다(법 제41조).

## 3. 金融機關 및 金融去來 關係 法律

### (1) 은행법의 개정

1997년말의 외환·금융위기 이후 제·개정된 금융개혁 관련법의 하나로서 1998년 1월 13일 전면 개정되고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금융감독제도가 개편되면서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은행소유구조 및 비상임이사제도를 개선하여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데 주목적을 두었다.

---

21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금융감독과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면서 종전에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및 한국은행은행감독원에 귀속되었던 은행감독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은행의 설립·합병·해산 등 인가 관련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현재는 금융감독위원회)으로,<sup>17)</sup> 은행 소유·지배구조, 건전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검사 및 제재 관련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귀속되었다. 또한, 은행주식의 동일인 보유한도는 계속 4%를 유지하되, 동 한도의 예외인정을 폭넓게 인정하였다. 즉, 외국인이 동 한도를 초과하여 10%까지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만으로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초과시, 25%초과시, 33%초과시에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내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은행 주식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범위에서 외국인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sup>18)</sup>(법 제15조제4항). 한편, 은행의 비상임이사의 구성 비율을 종전의 주주대표 50%, 소액주주대표 30%, 이사회 추천 20%에서 비상임이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주대표 70%, 이사회 추천 30%로 변경하였다(법 제22조제3항).

은행법은 1999년 2월 5일에도 또 한번 크게 개정되었다. IMF와의 정책협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동일인 등에 대한 여신관리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행정규제의 완화 차원에서 은행의 최대주주 변경시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였다(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

여신관리제도의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동일인 여신한도 설정 등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정의를 기존의 자본금,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에서 BIS 기준<sup>19)</sup>에 의한 기본자본(core capital : tier I)과 보완자본(supplementary

17) 1999년 5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금융기관 인·허가권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넘어 갔다. 정부조직법 부칙 제3조제46항 참조.

18) 다만,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4%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는 은행의 수는 1개로 제한된다(법 제15조제6항 단서).

19)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le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1988년 7월에 제정한 '자기자본 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적어도 8%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BIS기준은 자기자본의 구성 및

capital : tier II)의 합계로 변경하였으며(법 제2조제5호), 관리대상도 종전의 대출 및 지급보증 등의 '여신'에서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의 매입(자기자본적 성격의 것에 한함),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은행의 직·간접적인 거래를 의미하는 '신용공여'로 변경되었다(법 제2조제7호). 동일인(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자기자본의 신용공여는 자기자본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sup>20)</sup>(법 제35조제3항). 또한 동일차주(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 즉, 동일계열기업군을 말함)에 대한 신용공여도 자기자본의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sup>21)</sup>(법 제35조제1항), 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거액신용공여의 총합계액도 당해 은행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sup>22)23)</sup>(법 제35조제4항). 이와 함께 규제완화 차원에서 동일인 및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와 거액여신의 기준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은행의 지급보증한도(자기자본의 20배 이내)를 폐지하였으며, 은행 이사의 임기 및 이사의 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24)</sup>

##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제정

1997년 12월 31일 제정되고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은 금융실명제 실시의 근거가 된 1993년 8월 12일 대

---

위험가중자산의 분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담고 있다. BIS자기자본비율 규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졸고, "BIS 자기자본 규제 제도", 『국제법무연구』 제1권제1호,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1998. 12, 175~201면 참조.

- 20) 종전에는 동일인에 대하여 대출은 자기자본의 15%를 넘을 수 없었고, 지급보증은 자기자본의 30%를 넘을 수 없었다(개정전 은행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 21) 종전에는 동일계열기업군(동일한 계열주와 특수관계인 및 그 소속회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대한 여신(대출 및 지급보증을 합계)은 자기자본의 45%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은행감독규정 제58조제1항).
- 22) 종전에는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여신(대출 및 지급보증을 합계)을 거액여신이라고 정의하고, 이 거액여신의 총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였다(개정전 은행법 제35조제6항 및 은행감독규정 제60조제1항).
- 23) 거액신용공여 한도는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법 부칙 제1조), 동 한도를 초과하는 거액신용공여는 2000년 3월 31일까지 해소하도록 하였다(법 부칙 제2조). 한편, 동일인 및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법 부칙 제1조), 동 한도초과 신용공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법 부칙 제2조).
- 24) 그러나, 상법의 적용은 받게 되며,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상법 제383조제1항 및 제2항).

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대체 입법한 것이다. 긴급명령에 의한 금융실명제 실시과정에서 실명확인에 따른 금융거래시의 불편과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등 금융실명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실명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입법되었다.

우선 금융실명거래의 예외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미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와 공과금수납, 백만원 이하 송금 등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 제3조제2항제1호),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는 외국통화 매입, 외화표시 예금의 수입, 외화표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에 대해서도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3조제2항제2호). 또한 고용안정, 외환 및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비실명장기채권의 발행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였다(법 제3조제2항제3호).

금융거래의 비밀보장도 강화하였는데, 조세관서 및 금융감독기관의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회의 국정감사시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을 신설하였다. 즉, 세무관서의 장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의해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상속·증여 재산을 확인할 경우,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인할 경우 및 체납자의 재산조회외의 경우 등으로 제한하였다(법 제4조제1항제2호). 또한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필요한 경우, 고객예금 횡령 등 금융사고 적출에 필요한 경우,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법령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등에만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4조제1항제4호). 국회는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금융감독기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법 제4조제1항제3호).

자금출처조사 면제의 특례 조항도 신설하였다. 즉, 비실명금융자산의 실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이후 실명전환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며(법 부칙 제8조),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였다(법 부칙 제10조). 1998년 1월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유효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기준에서 제외시켜 분리과세하고,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을 15%에서 20%로 인상하였다(법 부칙 제12조).

### (3) 기타 금융기관 관계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이외에 금융기관 관계 법률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되었고, 보험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상호신용금고법, 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선물거래법 등이 개정되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1998.1.1 시행)은 그 동안 업종별로 나누어져 있던 개별 근거법을 통합하여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설립을 허용함과 동시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진입 및 업무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25)</sup> 보험업법의 개정은 금융감독제도 개편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와 예금보험기구의 통합에 따른 업무의 변경 및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보험회사 주주자격 제한제도의 폐지 등의 내용(1998.4.1 시행)과 보험회사의 공시제도 보완 및 보험회사의 경영자율화를 위한 규제완화 내용(1999.2.5 시행)을 담고 있다.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개정은 금융감독제도 개편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와 종합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 강화의 내용(1998.4.1 시행)과 새로운 개념의 자기자본(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합계) 및 신용공여를 기준으로 한 여신관리제도로 변경하는 내용(1999.4.1 시행)을 포함하고 있다. 상호신용금고법의 개정은 금융감독제도의 개편 및 예금보험기구의 통합에 따른 규정의 정비 및 신용관리기금법의 폐지<sup>26)</sup>의 내용(1998.4.1 시행)과 상호신용금고의 경영건전성 확보 및 규제 완화를 위한 내용(1999.2.1 시행)을 담고 있다. 신탁업법은 신탁회사에 대한 감독주체를 조정<sup>27)</sup>하고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

25)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수신기능이 없어 진입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업종별로 재정경제부예의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지급결제기능을 가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법 제3조제1항, 정부조직법 부칙 제3조제51항). 1999.5.24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

26) 신용관리기금은 상호신용금고의 예금보험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기능이 예금보험공사로 이전되면서 신용관리기금법이 폐지되고, 부실상호신용금고의 경영지도 등에 관한 내용은 상호신용금고법으로 이관되었다(법 제2조, 제23조의11,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15).

27) 신탁회사의 영업인가 및 취소와 관련된 권한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신탁회사 업무의 종류 및 방법 변경에 대한 인가, 건전성규제, 업무정지 명령 등의 권한은 금융감독위원회가 하게 되었다. 한편, 1999년 5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취소권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정부조직법 부칙 제3조제47항 참조.

루어졌다(1998.4.1 시행).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개정은 투자신탁회사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sup>28)</sup>,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1998.8.16 시행). 선물거래법의 개정은 선물거래 관련 감독 주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1998.4.1 시행).

#### 4. 資産流動化制度 導入 關係 法律

##### (1) 資産유동화에관한법률의 제정

1998년 9월 16일 제정되고 시행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은 금융기관 또는 성업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토지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주택금융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1) 資産유동화의 개념

자산유동화업무란 ①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업무 또는 ②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무를 겸영하는 은행 포함)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말한다(법 제2조제1호).

##### 2) 資産보유자의 범위 제한 및 유동화 대상 자산

이론적으로는 자산유동화에 있어서 자산보유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나, 법에서는 보유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로서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상호신용금고,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과 성업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그리고 일정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 등으로 한

28) 동일인의 투자신탁회사 주식소유한도(서울 소재 투자신탁회사 15%, 지방 소재 투자신탁회사 30%)를 폐지하였다(법 제56조 폐지).

정하고 있다(법 제2조제2호).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자산유동화가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sup>29)</sup>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은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 등(법 제2조제3호)으로서 유동화가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유동화 대상의 자산은 예측가능한 현금흐름(cash flow)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 되지만 현금흐름이 불규칙한 자산(부동산 등)도 자산유동화의 구조에 따라서 그 대상 자산이 될 수 있다.<sup>30)</sup>

### 3)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법에서는 자산유동화업무를 수행하는 특별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s : SPV)로서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무를 겸영하는 은행 포함) 및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이하 “유동화전문회사 등”이라 함)을 허용하고 있다(법 제3조제1항).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의 유한회사로서 1인의 사원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sup>31)</sup>(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 이는 설립비용 절감, 설립절차 및 운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주식회사 대신에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sup>32)</sup> 이 유동화전문회사는 직원을 고용할 수 없으며(법 제20조),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고(법 제25조),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완료되면 해산하는(법 제24조)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이다.

### 4) 자산유동화 계획의 등록

자산유동화를 하는 경우 민법상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고, 이 법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지므로 이에 상응하여 최소한의 건전성 감독의 차원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면 되고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산유동화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9) 유석호, “자산의 유동화제도에 관한 고찰”, 『증권조사월보』 1998년 9월호, 증권감독원, 32면.

30) 상계논문, 32면.

31) 상법상 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상법 제543조).

32) 상계논문, 36면.

등록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sup>33)</sup>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서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할 수 있는 유동화계획은 1개(신탁회사 제외)로 제한된다(법 제3조). 또한, 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채권양도와 관련된 대항요건의 특례<sup>34)</sup>를 인정하고(법 제7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양도시 민법에 규정된 저당권 이전등기를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으로 대신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였다(법 제8조).

### 5)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감독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대하여 허위기재 또는 법령위반 여부 등을 심사하여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5조). 또한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 신탁회사, 자산관리자 등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법 제34조).

### (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의 제정

1999년 1월 29일 제정되고 1999년 4월 30일 시행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은 금융기관이 주택의 구입 또는 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채권 및 증권을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제도를 도입하여 주택자금을 장기적·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금융

33) 전개논문, 39면. 따라서 등록을 하지 않고 자산유동화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절차의 복잡성 등에 의하여 자산유동화의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34) 채무자에 대한 특례로서는, 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동일하나,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일정한 주소지로 2회이상 통지하였거나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지에 채권양도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통지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법 제7조제1항). 또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특례로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자산양도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당해 등록을 한 때에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하고 있다(법 제7조제2항).

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제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것은 유동화전문회사가 1회에 한해 자산을 유동화한 후 해산되는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여, 장기적인 주택자금대출 관련 채권의 매입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는 금융기관<sup>35)</sup>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債券)을 발행하고 그 원리금을 지급하거나,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수익증권)을 발행하고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을 분배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법 제2조제1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는 실체가 있는 회사로서 최저자본금 250억원의 주식회사 형태이어야 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sup>36)</sup>를 받아야 하는 등 유동화전문회사에 비해 설립요건 및 절차가 엄격하다(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는 자기자본의 20배 이내에서 주택저당증권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sup>37)</sup>(법 제13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sup>38)</sup>, 자기자본 이내에서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수 있다(법 제14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 대한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5) 금융기관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법상 설립된 금융기관,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기관, 국민주택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제6호).

36) 1999년 5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았어야 했다. 정부조직법(1999.5.24 개정) 부칙 제3조제46항 참조.

37) 주요국의 경우 주택저당증권의 소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의 원리금을 지급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주택저당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과는 무관하게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이자를 지급하고 채권의 만기일에 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비하여, 주택저당증권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주택저당채권에서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을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므로 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 지급이 연체될 경우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에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다. 허재성/장민, “최근 주요 금융관계법의 제정 및 개정내용”, 『조사통계월보』 1999년 2월호, 한국은행, 58면.

38)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은 회사채 발행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법 제14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를 감독하고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에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법 제16조).

한편,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가 자산유동화업무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채권유동화계획의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 제4조),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시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 제5조), 채권양도와 관련된 대항요건 구비절차 간소화(법 제6조), 민법에 규정된 저당권이전등기에 관련된 특례인정(법 제7조) 등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규정과 동일하다.

### Ⅲ. 金融關係法制 整備의 展望 및 發展方向

#### 1. 中央銀行의 役割 強化

위에서 본 것처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제정 및 한국은행법의 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독자적인 통화신용정책 권한이 주어졌으나 은행감독권한은 한국은행에서 분리되어 새로 신설된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귀속되었다. 또한 IMF 구제금융 실시이후 부실금융기관의 퇴출 등 금융구조조정이 실시되면서 금융산업의 일대 변혁이 일고 있다. 이러한 때에 중앙은행의 역할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시대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의 임명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현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한국은행법 제13조제2항)에서 국무총리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인물을 중앙은행 총재로 선임할 필요가 있고, 통화신용정책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국회에 대하여 책임(accountability)을 지기 위해서도 한국은행 총재 임명에서 국회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회 동의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 상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영향력을 억제하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중앙은행이 통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둘째,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신용정책의 대상 기관을 비은행금융기관(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는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sup>39)</sup> 비은행금융기관은 그 동안 은행업무의 영역으로 업무를 확대하여 왔기 때문에 금융기관간에 공정경쟁의 여건을 조성하고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통화신용정책의 대상 기관을 비은행금융기관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sup>40)</sup>

셋째, 개정 한국은행법은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제외한 경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한국은행법 제98조 제2항),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치는 요소로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개정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정하여 이를 포함하는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하고, 설정된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국은행법 제6조). 그러나, 우리 나라 경제 여건상 물가변동이 통화량 이외의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단지 통화량 공급 조절에 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따라서 이는 오히려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저해하는 요소로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은행이 은행감독권을 보유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자주 논의되는 것이다. 은행감독권한이 독립된 별개의 기관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논거는, ① 중앙은행이 은행감독권한까지도 보유하는 경우는 은행감독정책과 통화신용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충돌(conflicts)이 발생할 수 있고, ② 따라서, 만약 그 충돌이 민감한 경우는 중앙은행은 은행감독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부실은행을 구제하기 위한 금리 인하 또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위험 감수 등 은행제도의 안전성과 건전성(safety and soundness)

39) 즉, 지급준비금 적립 의무 등 통화신용정책의 확대를 의미한다.

40) 미국의 경우도 1980년 ‘예금기관자유화법(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ct)’에 의하여 저축은행(savings banks),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s),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s) 등 고객으로부터 예수금을 받는 모든 예금수취금융기관으로 지급준비금 적립의무 대상 기관을 확대하였다.

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sup>41)</sup> 이에 반하여 중앙은행이 은행감독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는, ① 중앙은행이 은행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금융위기의 발생이 전체적인 경제위기로 확대되기 전에 그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인식과 능력을 갖추게 되고, 금융기관에 최종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다는 점<sup>42)</sup>과 ②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의 역할은 은행감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상세한 정보없이 달성될 수 없고, ③ 은행감독정책과 통화신용정책은 각각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잘 활용함으로써 상호 보완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sup>43)</sup> 따라서 건전한 은행 및 금융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은행감독권한을 보유하여 통화신용정책과 은행감독정책을 서로 보완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중앙은행이 은행감독의 주책임을 갖고 있거나 정부와 그 권한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sup>44)</sup>도 한국은행에 은행의 건전성 감독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 2. 金融監督機構의 問題點 및 改編方向

1997년말에 이루어진 금융개혁 관련법에 의하여 금융감독기구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모든 금융기관을 감

41) “The Federal Reserve Position on Restructuring of Financial Regulation Responsibilities”, *Federal Reserve Bulletin*, July 1984, pp.546~549.

42) William McDonough, “An Independent Central Bank in a Democratic Country: The Federal Reserve Experiences”, *FRBNY Q. Rev.*, Spring 1994, p.4.

43) Thomas F. Cargill, *Central Bank Independence and Regulatory Responsibilities: The Bank of Japan and the Federal Reserve*,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9, p.60.

44) 중앙은행이 은행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이상 G-10국가), 오스트레일리아, 그리스, 아이스랜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터어기(이상 OECD국가) 등이다. 중앙은행이 정부와 은행감독권한을 공유하는 국가는 벨기에, 독일, 일본, 스위스, 미국(이상 G-10국가) 등이다. 중앙은행이 은행감독권한을 보유하지 않는 국가는 영국, 캐나다, 스웨덴(이상 G-10국가),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이상 OECD국가) 등이다. “The Federal Reserve Position on Restructuring of Financial Regulation Responsibilities”, *Federal Reserve Bulletin*, July 1984, pp.553~56.

독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 국무총리소속하의 정부기구이다. 반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무자본특수법인이다. 즉, 두 기관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 법적 성격은 서로 다르다. 바로 여기서 금융감독권한에 대한 두 기관의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에 관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두 기관 사이의 업무영역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사실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규정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이 금융감독원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sup>45)</sup> 이 경우에 어떤 범위까지 금융감독원에 위임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두 기관이 권한 다툼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할 두 기관이 권한 다툼을 하는 등 알력이 발생함으로써 금융기관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러한 권한 다툼의 분쟁 소지를 없애고 효율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원의 내부기관으로 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금융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율적·독립적으로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sup>46)</sup> 이러한 점에서도 금융감독위원회를 정부기구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내부 합의제의결기관으로 만들어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거대한 통합금융감독기구가 탄생함으로써 권한의 집중에 의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증권·보험 업무 등 각 분야가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금융감독업무의 전문화를 추구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5)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또는 신고사항이 금융감독원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46) Basle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September 1997, p.13.

### 3. 兼業銀行制度(Universal Banking System)의 導入

우리 나라는 기본적으로 은행의 증권 또는 보험업무가 허용되지 않는 전문은행제도(specialized banking system)를 유지하고 있다. 즉, 은행은 예금의 수입 및 대출 등 은행고유업무와 거기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을 뿐이다. 은행이 별도의 인가절차 없이 취급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는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인수, 상호부금, 유가증권 투자 및 매출,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국채증권의 매매, 환매조건부채권매매, 국공채 창구매매, 수익증권의 판매, 팩토링, 부동산임대(제한적으로) 등이 있다.<sup>47)</sup> 한편, 은행이 비은행업무를 직접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sup>48)</sup>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는 은행고유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를 허용해주거나 겸영업무를 인가해주는 방향으로 은행업무의 확장이 이루어져 왔다. 이외에 자회사를 통한 타영역으로의 업무확대가 허용된다.<sup>49)</sup> 그러나, 아직 은행의 증권 및 보험업무의 직접 겸영이 허용되는 겸업은행제도<sup>50)</sup>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47) 은행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 재정경제부고시, 1998.4.1 제정.

48) 이러한 은행의 비은행업무로는 신탁업과 신용카드업을 들 수 있다. 1999년 5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종전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갖고 있던 비은행업무 겸영에 대한 인가권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넘어갔다. 정부조직법(1999.5.24 개정) 부칙 제3조제41항 참조.

49) 은행법 제37조제2항, 즉, 은행은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자문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회사, 선물회사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액이 자기자본의 15% 범위내에서 소유할 수 있다. 은행법시행령 제21조제1항, 은행감독규정 제48조.

50) 겸업은행제도라 함은 은행이 전통적인 예대업무뿐만 아니라 증권·보험 업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Sounders and Walter(1994)는 겸업은행업무(universal banking)를 “예금 및 대출, 증권매매, 외환, 주식 및 사채의 인수와 중개, 투자운용,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의 겸업은행업무는 은행이 일반 비금융기업에 상당한 투자를 하거나 지배하여 산업부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Anthony Saunders/Ingo Walter, *Universal Banking in the United Stat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84. 겸업은행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금융안정성(financial stability), 이익의 상충(conflicts of interest), 금융과점(financial oligopoly), 자본의 비효율적인 배분(inefficient allocation of capital), 경제력 집중(economic concentration power) 등의 측면에서 논의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줄고,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규제법의 발전 방향”, 46~49면 참조. 겸업은행제도의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 스위스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은행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겸업은행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비은행금융기관이 은행업무에 진출함으로써 은행의 수신 기반이 잠식되어 왔고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은행산업의 경쟁력 향상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은행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는 업무의 다양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겸업은행제도로의 이행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993년에 발표된 정부의 '5개년 계획 금융개혁안'에서는 은행·증권·보험업의 자회사를 통한 상호 업무 진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겸업은행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sup>51)</sup>

#### 4. 預金保險制度의 改善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산업에 있어서 규제의 역할 및 금융시스템의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sup>52)</sup> 예금보험제도의 목적은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어 파산하는 경우 선의의 예금자들을 보호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치된 예금보험공사는 1997년말의 외환·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퇴출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의 설립 등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 중

---

51) 미국의 경우는 1933년에 제정된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에 의하여 은행의 상업은행업무(commercial banking)와 투자은행업무(investment banking)를 분리하는 분업주의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은 은행감독기관 및 법원의 호의적인 법해석에 힘입어 글래스-스티걸법에서 명백히 금지되지 않는 여타 비은행업무에 꾸준히 진출하여 왔다. 한편 1995년에는 글래스-스티걸법의 폐지법안이 의회에 상정되기도 하여(여러 이해관계집단의 대립으로 비록 폐지는 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조만간 이 법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도 1992년 제정된 '금융제도개혁법'이 은행자회사를 통한 증권 및 보험업무를 허용함으로써 겸업은행제도로 이행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Thomas Cargill/Gregory Todd, "Japan's Financial System Reform Law: Progress toward Financial Liberalization?", *19 Brooklyn Journal of Int'l Law*, 1993, p.47 이하 참조.

52) Alvin C. Harrel, "Deposit Insurance Reform Issues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Structure of the American Financial System" in J. J. Norton et al. eds., *International Banking Regulation and Supervision: Change and Transformation in the 1990s*, Graham & Trotman/Martinus Nijhoff, 1994, p.307.

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1997년말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기존에 은행만을 대상으로 하던 예금보험공사가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금융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예금보험기구가 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의하면 부보금융기관은 부보예금 등의 잔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되어 있어(예금자보호법 제30조), 우리 나라는 단일보험료율방식(flat rate premium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단일보험료율방식은 소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sup>53)</sup>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단일보험료율방식에서는 부보금융기관은 리스크가 큰 업무 영위 결과 파산하면 정부가 구제해줄 것이라고 믿고 자산포트폴리오 및 자본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신중한 투자를 하지 않고 고수익 업무를 추구하게 된다.<sup>54)</sup> 이러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험가중보험료율방식(risk-based premium system)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험가중보험료율방식은 시장원리(즉, 금융기관 도산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차등 부과)를 반영한 것이므로 금융기관 주주나 예금자들은 부보금융기관이 리스크가 큰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sup>55)</sup>

미국의 경우에도 19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mprovement Act of 1991)에 의하여 위험가중보험료율방식이 도입되었는데 그전에는 단일보험료율방식이 실시됨으로써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곤 하였다.

한편, 우리 나라의 경우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별로 경영 및 재무상황, 예금보험기금의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예금자보호법 제30조), 위험가중보험료율방식의 도입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위험가중보험료율

53) ‘도덕적 해이’란 금융기관이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무시하여 영업을 영위하려고 하고 또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향을 말한다.

54) Kenneth E. Scott, “Deposit Insurance and Banking Regulation: The Policy Choices”, *44 Business Lawyer* 907, 1989, p.910.

55) Jerrie L. Chiu, “Introducing Market Discipline into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System: O’Melveny & Myers v. FDIC”, *1 Connecticut Insurance Law Journal* 197, 1995, p.199.

방식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이 제도 도입의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sup>56)</sup> 이 방안에 의하면 개별 부보금융기관들을 재무건전성(BIS자기자본비율,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등급, 예금보험공사가 실시하는 경영위험평가 결과 등을 종합)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 차등화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가중보험료율방식은 부실금융기관일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고 또한 보험료율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므로 부보금융기관은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위험가중보험료율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등화폭 확대와 등급 세분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여하튼 부보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가중보험료율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 IV. 맺는 말

이상에서 지난 1997년말 외환·금융위기 이후 제정되거나 개정된 금융관계 법률의 정비현황을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 제도의 개편, 금융산업 구조조정 관계법률, 금융기관 및 금융거래 관계법률, 자산유동화제도의 도입 관계법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외환·금융위기에 따른 IMF 구제금융 실시 이후 정치·경제·사회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다. 특히 외환·금융위기가 낙후된 금융산업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하에 실시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은 5개 부실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부실금융기관의 퇴출 등 금융산업의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1년여간 금융산업의 혁신을 가져온 여러 가지 조치가 새로운 법 제정 혹은 개정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새로운 통합금융감독기구가 설치되어 금융구조조정을 총괄하고 있으며, 중앙은행도 독자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외에도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관한 규정의 정

---

56) 김인식, “예금보험료 4단계로 차등화”, 한국경제신문, 1999.4.16자.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의 경우는 2000년부터, 상호신용금고는 2000년 혹은 2001년부터, 증권회사와 신용협동조합은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비, 예금보험제도의 개편,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의 강화, 자산유동화 제도의 도입 등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앞으로의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관계법의 정비방안을 몇가지 제시하고 있다. 우선, 비록 중앙은행이 독자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하나 아직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신용정책 대상기관의 비은행금융기관으로의 확대,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권한 보유 등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통합된 금융감독기구도 의결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됨으로써 발생하는 두 감독기관의 권한다툼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원의 내부의결기구로 하고, 금융감독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정부조직으로 되어 있는 금융감독위원회를 분리하여 독립된 기구로서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은행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은행이 증권·보험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는 겸업은행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보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따라 차등화된 보험료를 부과하는 위험가중보험료율방식이 가능한 빨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